
제4회 경상북도승마협회장배전국승마대회

- ☐ 기 간 : 2026년 9월 26일(토) ~ 28일(월)
- ☐ 장 소 : 상주국제승마장

GBCF 경 상 북 도 승 마 협 회

대 회 요 강

1. 대 회 개 요

제4회 경상북도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

대 회 기 간	• 2026년 9월 26일(토) ~ 28일(월)
대 회 장 소	• 상주국제승마장
주최 / 주관	• 경상북도승마협회
후 원	• 경상북도, 경상북도체육회, 상주시, 대한승마협회

동 대회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대한승마협회 공인경기로 개최됩니다.

2. 개 최 종 목

가. 개최종목 및 참가구분

구 분	선수구분	말구분	공인여부	내 용
마장마술	통합부	OPEN	공인	• F1(신규), D2, C(2회), B, A(2회), S1-class
	통합부	O•P	공인	• D1
	통합부	O•H	공인	• D1
장애물	통합부	OPEN	비공인	• 30, 50, 60, 70,
	통합부	OPEN	공인	• 100, 105, 110, 115, 120, 130cm
	통합부	O•P	공인	• 80, 90cm
	통합부	O•H	공인	• 80, 90cm
이벤트	통합부	OPEN	비공인	• 권승경기
부별구분	• 학생부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 일반•동호인 : 일반부, 동호인부			접수 완료후 부별에 따라 시상함.
말 구분	• OPEN : 생산국, 체고에 관계 없이 출전 가능 • O • H : 체고 150cm 이상(편자포함), 생산국에 관계없이 출전 가능 - 포니가 체고검사 대한승마협회 미인정 말일 경우 참가 가능 함. - 포니로 체고검사를 대한승마협회에서 인정한 말일 경우 번외처리 함. • O • P : 체고 149.9cm 이하(편자포함), 사전 공인대회 체고 측정 완료된 말, 생산국에 관계없이 출전 가능 - 대한승마협회에서 포니로 인정된 말에 한함.(미인정 말일 경우 번외처리)			

3. 참가 제한사항 (공인+비공인 공통사항)

가. 참가 자격

공인여부	구 분	출전제한
공인	선수	• 2026년 대한승마협회에 선수등록이 완료된 자
	말	• 대한승마협회 등록된 말 또는 외국 여권을 소지한 말
비공인	선수	• 등록 제한없음 / 장애물-90cm이상 입상(공인) 선수 참가 불가
	말	• 대한승마협회 등록된 말 또는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한 말

나. 종목별 기승 제한사항

구 분	세부종목	기승제한
장애물	90cm이하	1인 무제한 / 1마 2인
	100cm이상	1인 무제한 / 1마 1인
마장마술	F Class이하	1인 무제한 / 1마 2인
	D Class이상	1인 무제한 / 1마 1인

다. 경기성립 및 시상기준

구분	경기(부별) 성립	시상 대상	비고
전 종목 동일 적용	5명	1 ~ 3위	공인대회 규정에 준함
	4명	1 ~ 2위	
	3명	1위	
	2명 이하 경기 미성립		

※ 공인종목의 경우 KEF규정에 따른 입상 성적 반영

라. 종목별 출전 제한사항 (대한승마협회 주관대회 입상 및 성적 기준)

제10조(참가 자격 제한)

① 전년도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선수에 한하여 차기 대회부터 상위 Class 출전이 가능하다.

1. 장애물

Class	내 용
130 또는 135 Class → 140 Class	130 또는 135 Class에서 2회 이상 무 감점
120 또는 125 Class → 130 Class	제한없음
110 Class → 120 Class	110 Class ~ 115 Class에서 2회 이상 무감점

2. 마장마술

Class	내 용
A Class → S Class	A Class에서 2회 이상 비율 63% 이상
B Class → A Class	제한없음
C Class → B Class	C Class에서 2회 이상 비율 63% 이상

제10조(참가 자격 제한)

② 다음의 경우 종목 출전이 불가하다.

가. 장애물

Class	내 용
120 또는 125 Class 입상 시	105 Class이하 출전 불가 (110 Class까지 출전 가능)
110 또는 115 Class 입상 시	95 Class이하 출전 불가 (100 Class까지 출전 가능)
100 또는 105 Class 입상 시	85 Class이하 출전 불가(90 Class까지 출전 가능)
90 또는 95 Class 입상 시	75 Class이하 출전 불가(80 Class까지 출전 가능)
85 Class 이하 입상 시	제한없음(60 Class 출전 가능)

1. 상기의 참가 자격 제한은 전년도 선수와 말의 조합으로 입상 시에 해당된다. (단 선수와 말의 조합이 다를 경우는 출전이 가능하다.)

나. 마장마술

Class	내 용
B Class 이상 입상 시	D Class이하 출전 불가 (C Class까지 출전 가능)
C Class 이상 입상 시	E Class이하 출전 불가 (D Class까지 출전 가능)
D Class 이상 입상 시	F Class이하 출전 불가(E Class까지 출전 가능)
E, F Class 이상 입상 시	제한없음(G Class 출전 가능)

1. 상기의 참가 자격 제한은 전년도 선수와 말의 조합으로 입상 시에 해당된다. (단 선수와 말의 조합이 다를 경우는 출전이 가능하다.)

- ③ 해당 대회 장애물 100 Class 및 마장마술 D Class 이하에 출전하는 선수는 출전하는 해당 대회의 장애물 120 Class 및 마장마술 B Class 이상에 신청할 수 없다.
- ④ 종합마술 및 복합마술 경기에서 획득한 경기 실적은 마장마술 및 장애물 자격 제한과 무관하다.
- ⑨ 포니 경기는 말의 체고가 150cm(편자 포함) 미만의 말이 출전하는 경기로 참가 선수는 유소년에 한하며, 포니는 포니 경기로만 출전해야 한다.
- ⑩ 유소년 포니 경기의 80 Class 이상에서 입상한 선수는 60 Class 이하의 Class에 참가할 수 없다.

4. 경 기 규 정

가. 마장마술 순위 결정 방법

- ☐ 경기 과목에 따라 채점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 ☐ 백분율이 동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순위가 결정된다.
 - 5/3심인 경우 : 상, 하 점수를 제외한 중간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
 - 2심인 경우 : C지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
- ☐ 종목별 감점에 관한 사항은 심사지에 표기된 방식으로 감점한다.
- ☐ 각 종목별 심사지를 숙지하여 경기에 출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물 경기 (FEI 220.2.1.1)

- ☐ 본 경기 소요 시간과 감점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이다.
- ☐ 장애물경기 시간 감점은 2022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 본 경기 소정 시간 초과 시 1초당 1점
- ☐ 장애물 경기 실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2회 거부 및 1회 낙마하는 경우
 - ② 정해진 코스를 이탈 또는 역비월 하는 경우
 - ③ 45초 이내에 다음 장애물을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 ④ 말의 반항 등의 사유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정해진 마구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 장애물 경기 (FEI 220.2.1.2)

- ☐ 본 경기 소요 시간과 감점에 의해 재경기로 순위가 결정될 수 있는 경기이다.
- ☐ 장애물경기 시간 감점은 2022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 본 경기 소정시간 초과 시 1초당 1점 / 재경기는 제한 시간만 적용함.

라. 장애물 경기 (FEI 222.1.4.3) / 2Phase

- ☐ 경기는 1단계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 1단계에서 낙하 또는 거부(소정시간 초과 시간벌점)로 인한 감점이 없는 경우, 2단계진행이 가능함.
- ☐ 2단계 진행한 선수는 2단계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 2단계에 출전한 선수 차순위로 1단계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 ☐ 벌점 및 실권사유는 기존 장애물 경기규정과 동일하다.

마. 장애물 경기 (FEI 217.2)

- ☐ 본 경기는 감점이 없고 소요 시간으로만 순위가 결정되는 스피드 경기이다.
- ☐ 거부 및 낙하, 전도에 따른 벌초 및 실권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장애물 낙하 시 1개 장애물마다 벌초 4초가 주어진다.
 - 거부 시에는 별도의 벌초는 없으나, 2회 거부 시 실권 처리된다.
 - 거부 전도 시에는 타임은 정지되고 벌초 6초가 주어지며, 1회 거부가 된다.
- ☐ 거리에 따른 소정 시간은 없고 전장 600m 이하는 120초, 600m 이상은 180초의 제한 시간이 적용된다.

☐ 장애물 경기 실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2회 거부 및 1회 낙마하는 경우
- ② 정해진 코스를 이탈 또는 역비월 하는 경우
- ③ 45초 이내에 다음 장애물을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 ④ 말의 반항 등의 사유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정해진 마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바. 장애물 경기 (최적시간_Time Allowed)

☐ 본 경기는 선수들이 올바른 속도와 정확한 코스로 경기를 운영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기이다.

☐ 최적시간은 소정시간에서 3초를 뺀 시간으로 계산한다.

- 최적시간을 초과하여도 감점은 없으나, 소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매 1초마다 1점 감점한다.

☐ 순위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본 경기 감점이 낮은 선수 중 최적시간에 가장 가까운 순으로 순위 결정
- 최적시간이 60초일 때 순위 결정 시, 감점이 같은 선수 중 59초와 61초는 59초가 우선

☐ 선수 및 말은 장애물 복장 및 마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물 경기 실권 및 실격 규정은 대한승마협회 규정에 준한다.

☐ 경기 중 선수의 무전기, 이어폰 등 통신장비 사용 일체를 금지한다.

☐ 마지막 장애물 전, 후 구간에서 의도적인 보법변환(평보 또는 속보) 시, 감점(4점)을 부여한다.

☐ 제3의 원조 “초”를 불러주는 행위는 실권 처리되며, “빠르다, 느리다, 천천히” 등 속도조절 원조는 가능하다.

사. 권승경기

☐ 복장은 상하의 색상 제한 없음 단, 유소년은 안전조끼 필수 착용

- 채찍과 박차는 필요에 따라 가능하며, 신발은 승마화(첵)를 착용하여야 한다.

☐ 유소년경기 시작/도착구간에서 지도자(1명)의 원조 및 지도가 가능하다.

- 지도자는 경기장 내 출입은 가능하나, 말을 유도할 수는 없다.

☐ 1번 장애물 - 4M 간격의 라바콘 7개를 통과 구간

☐ 2번 장애물 - 회전장애물 구간

☐ 3번 장애물 - 회전장애물 구간

- 4번 장애물 - 횡목 넘어가기 구간(아래사항 참고)
 - 보법은 무관하나, 횡목 사이마다 발이 짚고 지나가야 한다. (미이행 시 +8초)
 - 까발레티 낙하(공이 떨어지는 경우)(+8초)
 - 4번 장애물(까발레티 구간) 최대벌초는 16초이다.
- 1번 장애물 구간을 지나 2번과 3번 회전 장애물 구간을 1바퀴 회전 후
4번 횡목 넘어가기 구간을 통과 후 결승지점으로 들어온다.
 - 경로위반 1회 시 실권, 전 구간 누적 2회 거부 시 실권 처리된다.
 - 낙마를 하거나 경기장 이탈 시 실권처리 된다.
- 횡목 및 장애물을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릴 경우 각 구간마다 벌초 8초 적용

5.

대 회 일 정

일 자	장 소	개최종목	적용규정
9. 25. (금)	본 경기장	■ Practice-1 : 장애물 100 ~ 110cm	1두당 100초
		■ Practice-2 : 장애물 80 ~ 90cm	
		■ Practice-3 : 장애물 120 ~ 130cm	
		■ Practice-4 : 장애물 50 ~ 60cm	
9. 26. (토)	보 조 경기장	• 제1경기 : 마장마술(OPEN)-C class	KEF과목
		• 제2경기 : 마장마술(O•H)-D1 class	
		• 제3경기 : 마장마술(OPEN)-B class	
		• 제4경기 : 마장마술(OPEN))-F1 class	
		• 제5경기 : 마장마술(OPEN)-A class	
	야 외 경기장	• 제6경기 : 장애물(OPEN)-110cm	FEI220.2.1.1
		• 제7경기 : 장애물(O•H)-80cm	FEI220.2.1.1
		• 제8경기 : 장애물(OPEN)-30cm	최적시간
		• 제9경기 : 장애물(OPEN)-100cm	FEI220.2.1.1
		• 제10경기 : 장애물(O•P)-90cm	FEI220.2.1.1
9. 27. (일)	보 조 경기장	• 제11경기 : 마장마술(OPEN)-C class	KEF과목
		• 제12경기 : 마장마술(O•P)-D1 class	
		• 제13경기 : 마장마술(OPEN)-A class	
		• 제14경기 : 마장마술(OPEN))-D2 class	
		• 제15경기 : 마장마술(OPEN)-S1 class	
		• 제16경기 : 권승경기	자체규정
	야 외 경기장	• 제17경기 : 장애물(OPEN)-115cm	FEI222.1.4.3
		• 제18경기 : 장애물(OPEN)-50cm	최적시간
		• 제19경기 : 장애물(O•P)-80cm	FEI220.2.1.1
		• 제20경기 : 장애물(OPEN)-60cm	최적시간
		• 제21경기 : 장애물(OPEN)-120cm	FEI217.2
9. 28. (월)	야 외 경기장	• 제22경기 : 장애물(OPEN)-105cm	FEI220.2.1.1
		• 제23경기 : 장애물(OPEN)-70cm	최적시간
		• 제24경기 : 장애물(OPEN)-130cm	FEI220.2.1.2
		• 제25경기 : 장애물(O•H)-90cm	FEI220.2.1.1

※ 상기 일정 및 경기 적용 규정은 접수 마감 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권

제20조(기권)

- ① 공인승마대회 참가 신청 후 선수 및 말의 부상, 건강 악화 등으로 기권할 경우는 서면으로 기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연습마장 및 경기 중 기권 사유가 발생하여 기권할 경우 스텐드에 보고하고 수의사 또는 심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기권 신청 미이행으로 인한 No Show 발생 시에는 벌금(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회종료 전까지 벌금 미납 시 벌금 납부 시까지 모든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⑤ 당해 대회종료 이후라도 부당하거나 부정한 사유로 의도적인 기권을 한 경우에는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대회출전정지(납부 시까지)이상의 징계 조치를 한다.

□ 번외

제11조(출전신청비)

- ⑥ 대회 개최 중 번외경기를 참가하는 말은 번외경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경기 심판장(Bell/C지점) 승인하에 **출전신청비와 동일한 금액**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출전할 수 있다.
- ⑦ **번외경기는 해당 경기의 심판장이 승인한 경우 마지막 순번으로 참가하여야 하고, 번외경기 처리된 말은 그 즉시 이후 경기는 번외 출전일에 한하여 모두 번외 처리가 된다.**

□ 각종위반

- ① 위반의 범위는 동 규정 위반자, 국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규정 위반 선수(단체) 등에 한하며 경고 누적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다.
- ② 위반선수(단체)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급할 경우에는 위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일시가 표현되는 사진, 비디오 또는 발견자를 제외한 2인 이상의 증인)
- ③ 경고장 발급 횟수에 따른 벌금
 1. 1회 경고장 발급
 2. 2회 경고장 발급과 대회 해당 종목 실권 처리와 30만원 벌금
 3. 3회 경고장 발급과 차기 3개 대회 출전정지
 4. 4회 경고장 발급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벌금을 부과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벌금을 협회에 납부하지 않은 선수(단체)는 납부 시까지 대회출전을 금지 시킬 수 있다.
- ⑤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
- ⑥ 자격증이 없는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하다가 사고 시 협회와 무관하게 당사자 책임이며 당해 대회 출전 정지 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

7.

참가자 준수사항

- ☐ 본 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EF 및 FEI규정을 준용한다.
- ☐ 참가 신청 시 경기순서와 종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 규정에 따른 마복, 마구, 연습장에서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반드시 준수한다.
- ☐ 경기장 입장 시(경로답사 등)선수는 규정된 대회 복장을 갖추어야 하고, 지도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입장하여야 한다.
- ☐ 대회기간 중 말의 부상이나 경기장 전 지역에서 말 학대 행위가 적발 또는 신고 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무조건 실격처리 한다.
- ☐ 대회요강 및 공인승마대회 규정 미 준수 시 입상은 취소될 수 있다.
- ☐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 및 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 ☐ 본 협회에서는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스포츠평제 보험에 가입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는 보험약관에 준하여 적용하고, 참가선수 개인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 ☐ **경기장 내 소란 및 위법 행위 강력 단속.** FEI 일반규정 164조 12항에 의거하여, 선수에게 심리적 학대(언어 폭력, 모욕,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행위, 과도한 육성 지도 등) 및 신체적 학대(신체적 외상이나 부상을 발생시키는 모든 의도적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 등) 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와 더불어 사안의 엄중에 따라 경고 없이도 즉각적으로 퇴장 조치, 벌금, 자격 정지, 형사 고발까지 시행할 예정임. **절대 경기장 내에서 선수에게 욕설이나 큰 소리로 화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 ☐ 관람객의 동반 **애완동물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물의 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진다.
- ☐ 경기장 내 **모든 지역은 금연으로 운영**되며, 흡연자는 조직위에서 지정한 **흡연구역을 이용**하여야 한다. (적발 시 경기장 출입 제한)
- ☐ **동 대회 공인종목 출전 선수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전 가능합니다.**

※ 미제출 시 대회 참가 불가

구분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기한
초등, 중등, 고등 학생 선수	- 붙임 1. 학교장 확인서 - 붙임 2. 학교폭력 부존재 서약서	hsqr6344@naver.com	대회 개최 2일 전
대학부 (2003년 이후 출생)	- 붙임 2. 학교폭력 부존재 서약서		

8. 시상 및 훈련보조금(상품) 지급방법

가. 훈련지원비 내역

(단위 : 천원)

번호	종목		1위	2위	3위	합 계
	구분	Class				
1	마장마술	F1 (OPEN)	300	200	100	600
2		D1 (O•P)	400	250	150	800
3		D1 (O•H)	400	250	150	800
4		D2 (OPEN)	400	250	150	800
5		C (OPEN)11경기	500	350	200	1,050
6		B (OPEN)	600	450	300	1,350
7		A (OPEN)13경기	600	450	300	1,350
8		S1 (OPEN)	700	500	300	1,500
9	장 애 물	30 (OPEN)	300	200	100	600
10		50 (OPEN)	300	200	100	600
11		60 (OPEN)	300	200	100	600
12		70 (OPEN)	300	200	100	600
13		80 (O•P)	400	250	150	800
14		80 (O•H)	400	250	150	800
15		90 (O•P)	500	350	200	1,050
16		90 (O•H)	500	350	200	1,050
17		100 (OPEN)	600	450	300	1,350
18		105 (OPEN)	600	500	300	1,400
19		110 (OPEN)	700	500	400	1,600
20		115 (OPEN)	700	500	400	1,600
21		120 (OPEN)	800	600	500	1,900
22		130 (OPEN)	1,000	700	500	2,200
23	참여종목	권승경기	300	200	100	600
총 계			11,600	8,150	5,250	25,000

나. 시상방법(훈련지원비)

- 1) 시상은 부별성립 및 시상기준을 적용합니다.
- 2) 훈련지원비는 각 종목의 부별이 아닌, 통합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3) 동일 종목에서 동일 선수(말)가 중복 입상할 경우 시상은 하위 훈련지원비는 차 순위에게 승계 됩니다.
- 4) 훈련지원비 및 상품 수령자는 수령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지급됩니다.
- 5) 훈련보조금은 사업소득 3.3%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

9.

참가신청

번 호	구 분	내 용		
1	참가신청	신청기간	공고일 ~ 9월 21일(월) / 20시 까지	
		참가신청	www.mar.co.kr <== 접속 후 신청	신청 시 카드결제
		※ 참가신청 시 선수등록번호 및 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2	말 입사	입사일	9월 24일 (목) / 10시 이후	
3	참가비	유 형		금 액
		장애물	초등부	종목당 30,000원
			중등부	종목당 40,000원
			고등부	종목당 60,000원
			대학부	종목당 70,000원
			일반부	종목당 70,000원
			동호인부	종목당 70,000원
		마장마술	초등부	종목당 30,000원
			중등부	종목당 40,000원
			고등부	종목당 60,000원
			대학부	종목당 90,000원
			일반부	종목당 90,000원
			동호인부	종목당 90,000원
		이벤트경기	통합부	종목당 30,000원
		연습경기	사전신청	종목당 30,000원
당일신청	종목당 40,000원			
번외경기		종목별 참가비와 동일		
4	마방비	마방 사용료		1칸당 50,000원
		툽밥 사용료		1칸당 75,000원
		추가 톽밥		1포당 15,000원
5	편의시설	천막		1동당 160,000원
		의자		4개(1set) 12,000원
		테이블		1개당 12,000원
6	문의처	* 문의사항 : 홀스퀘어(031-796-6344)		

학교장 확인서(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 [경기대회 참가 신청용, 2026.3.1. 적용]

학교장 확인서

학교명	지역명 학교명 예) 서울 ○○초		종목명	○○○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학교 담당자	성 명	○ ○ ○	종별	남(여)초, 남(여)중, 남(여)고			
	연락처	(000) 000-0000	적용 학년도 (기간)	2026학년도 ('26.3.1. ~ '27.2.28.)			
순	이름	① 누적 일수 / 허용 일수	②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순	이름	① 누적 일수 / 허용 일수	②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1		/		11		/	
2		/		12		/	
3		/		13		/	
4		/		14		/	
5		/		15		/	
6		/		16		/	
7		/		17		/	
8		/		18		/	
9		/		19		/	
10		/		20		/	

[작성 방법]

- ① (누적 일수 / 허용 일수) 현재까지 사용한 총 누적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를 기입
 [예] 현재까지 사용한 대회·훈련 참가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총합이 10일인 경우 ⇨ 표기: (고) 10/50
- ②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확인은 학교장의 법적 의무사항
 이므로 확인 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제공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확인 표시는 "✓"
- (대상/기준) 초4 ~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 적용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의무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 허용
- ※ 지필고사 미실시하는 초등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하고,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학기(년)는(은) 최저학력제 미적용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미이수하면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

위와 같이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사용 현황 및 최저학력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000학교장

(직인)

■[지역 및 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2021.11.1.개최하는 대회부터 시행
(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5.10.01.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학교명	지역명 학교명 예) 서울 ○○고		종목명	○○
소속팀명	○○○			
선수정보	성 명		종별	○○○
	연락처		적용대회	대회명 : 대회기간:

학교폭력예방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경기) 참가 및 등록 제한

처분결과	대회(경기) 참가 및 등록 제한기간 *동 기간 선수등록 제한 병행	제한기간과 대회기간 중복 유무	처분일	중복 일수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개월	유/무	0000.00.00	*일
• 3호(교내봉사)	5개월	유/무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8개월	유/무		
•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10개월	유/무		
• 8호(전학)	12개월	유/무		
• 9호(퇴학)	○ 퇴학 사유가, 1)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10년 2)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유/무		

※ 처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무” 표기(처분일 및 중복 일수 공란)

※ 처분 받은 이력이 있으나,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무” 표기(처분일 및 중복 일수 공란)

※ 처분 받은 이력이 있고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 표기(처분일 및 중복 일수 표기)

* 대회(경기) 주최·주관단체는 대회(경기) 참가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을 고려해 참가 여부 결정

※ 서약서 제출 후 대회(경기) 종료일 사이에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한기간 종료일 내에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재작성 후 대회(경기) 주최·주관단체 제출

상기와 같이 본인은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양식에 따라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서약서 제출시점과 대회(경기) 종료일 사이에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한기간 동안 대회(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며, 향후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해당실적 삭제와 부정선수로 판단 시 내려지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본인 (서명)

확인자 학부모 또는 지도자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대회(경기)를 주최/주관하는 단체는 본 서약서를 참가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받아야 함

권승경기

